##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84

발의연월일: 2020. 12. 1.

발 의 자: 민형배·김민철·김철민

박광온 · 소병훈 · 송갑석

안규백 • 양경숙 • 이소영

이용빈 · 이정문 · 임종성

주철현 · 최종윤 · 홍익표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법은 "5·18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 규정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시민들의 공로는 빠져있습니다. 이에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 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 복·신장시킨 활동'을 추가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 히 하려 합니다(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공권력 행사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	1
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	
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	
한 <u>공권력</u> 행사로 다수의 희	<u>공권력 행사에 항거하여</u>
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
을 말한다.	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
	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